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경상북도 경제산업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4월 12일, 이우청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최병근 의원

나. 제안이유

○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특화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반 시설의 우선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최근 효율성과 접근성 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이동성의 최적화로 생활 패턴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모빌리티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상북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취지와 시의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안의 주요 전문용어들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혁신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위 법에 따르면 주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모빌리티¹⁾ -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
 - 모빌리티 특화도시²⁾ -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혁신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도시.

1) 같은 법 제2조제1호

2) 같은 법 제10조

- 모빌리티 서비스³⁾ -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 안 제5조(육성계획 수립)에서는 「모빌리티혁신법」 제3조에 따른 육성 계획 수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 있는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타 조례의 사례를 참고할 경우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 조례」 제2조의 '경상북도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⁴⁾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또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속도를 고려할 때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본계획과 별도로 시행계획의 수립 여부도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6조(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특화도시 활성화)에서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제1호의 조문 중 '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은 실제 사업 추진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연관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3) 같은 법 제2조제4호

4)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서는 모빌리티 관련 기술의 촉진을 위한 사업의 내용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안 제8조(기업 등의 유치)에서는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업 등의 유치 노력 의무를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서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기업 유치 관련 기본조례로서 이미 시행중인 바, 본 조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반 시설의 우선 공급 등)에서는 도내 유치기업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조문 내용 중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다른 유치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문구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마케팅의 지원)는 모빌리티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일부 비용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조례안 제6조제1항제4호에 “도내 모빌리티 생산품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판로지원”의 규정이 있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기금)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의 근거를 규정함. 이와 관련, 현재 첨단 기술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모빌리티 산업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⁵⁾하여 기금의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안 제13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는 「모빌리티혁신법」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반영하여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모빌리티산업은 이동성의 극대화를 강점으로 차량호출, 전기 스쿠터, 드론 등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폭넓게 수용되고 있으나 산업적 측면에서는 체계적 발전전략 수립과 대응수단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국제적으로는 완성차, ICT 업계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투자를 확대 중이며, 자율주행 택시·배송 등의 사업 확장에도 집중하고 있음.

5)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주요 글로벌 완성차기업 투자 현황 >

포드	폭스바겐	도요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글과 공동 연구센터 설립('22) 리프트와 협력하여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출시('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주행 스타트업 Argo AI 투자 ('21)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활용 협력 강화('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라와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21) UAM 분야 투자 추진

○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서비스 중심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 '25년까지 국내 63조원, 미국에 13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대표적 플랫폼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경북도의 경우, 모빌리티산업은 전국 3위권으로 업체수 2,744개(전국 6.15%), 총매출액 15조8천억원(전국 10.93%), 종사자 3만8천명(전국 5.86%) 등으로 지역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 업체수는 경주, 경산, 칠곡, 구미, 영천 순으로 5개 시·군 업체가 82.1%를 차지하며 울산의 완성차와 연계하여 모빌리티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음.

○ 한편, 미래모빌리티 산업 전환 추세에 따라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기존 부품 대비 37%(1.1만개)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국내외적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 첨단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시의성과 달성목표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경상북도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기금 설치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 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6)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